

제317회 임시회
2013. 1. 31(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1. 31(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1월 14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1월 15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1월 23일

(제3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균형건설국장 윤 재 길)

가. 제안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를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정지원의 대상(안 제2조)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안 제3조)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 사업의 실적보고(안 제4조)
 -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시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및 중단 등(안 제5조 및 제6조)
 -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규정 위반 시 중단 또는 환수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문 홍 열)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제50조제2항1)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지원중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충족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보조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1) 제50조(재정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이하 생략)

규정되어 있으며,

- 입법예고('12.10.24. ~ '12.11.13.)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정책의도를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모순이나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이 제출되었으며,
-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보조금의 사후관리 및 재정지원의 중단,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운영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 및 등록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4. 기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군의 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조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가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
3. 재정지원금의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재정지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제정) 1999-07-09 조례 제 2463호

(일부개정) 2005-03-18 조례 제 2856호

(일부개정) 2008-11-07 조례 제 3113호

(일부개정) 2010-06-30 조례 제 3265호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농어촌·마을·시의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용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노선 중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2. “공동시설”이란 이용승객 편의제공과 운전자가 안전하고 신속한 운송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 중 고속형과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지원금의 보조 및 용자

제4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용자 할 수 있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자동차의 고급화

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다.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라. 낡은 차량의 대체

마.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무료환승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바.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택시호출시스템

나.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다. 버스와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라.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마. 기타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공동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은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사업

4.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원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정부의 보조금

2. 일반회계지원금 및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융자회수금

4. 기타 여객자동차관련 수입금

제5조(대상자선정 및 지원)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중 보조대상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매년 7월말까지 선정하여 다음연도 1월부터 지원한다. 다만 용자대상사업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자체 재원 또는 금융기관 융자알선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은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하되 도비 예산은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 시군비와 함께 시장·군수 책임 하에 집행한다.

제6조(보조 및 용자신청) ① 지원금의 보조 또는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조지원신청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 및 용자결정) ① 시장·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보조 또는 용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용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목적의 적합 여부
2. 보조 또는 용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용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 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용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용자할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지원금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차등지원) ①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전액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의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운행결손의 보조) 제4조제1항제2호의 운행결손액 산정 및 지급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담보 및 용자금상환방법 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용자금의 담보·채권 재무관리, 상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변경)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보조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의 중단) 도지사는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 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자금의 차입)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회계로부터 전입을 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4조(보조사업 실적보고) 지원금을 보조받은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사업년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를 받은 사업자에게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는 등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계법령 발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보조 또는 용자의 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면허의 종류·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용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시행계획·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계획서

제21조의2(보조 또는 용자 대상 운송사업)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3. 학생·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실시

2. 비용 발생 요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발생

3. 관련조문 :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현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현황 및 재정지원의 기본전제는 향후 5년간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분권교부세, 도비보조금 및 시군비의 규모 또한 변동이 없다고 전제한다.
- 재정지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한다.

나. 추계 결과

-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총 70,110백만원 소요되며,
- 그 중 도비는 7,994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연 14,022백만원 : 분권교부세 7,367백만원, 도비 1,599백만원, 시군비 5,056백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 분권교부세 및 도비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장 이용재

